

성희롱 등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

2001. 5. 9 제정

2009. 6. 16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구성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3.2.7)

제 2 조 (적용범위) ①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성폭력에 적용한다.

②본교 구성원이 피해자 또는 가해의 의심을 받고 있는 자인 때에는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(개정 2003.2.7)

제 3 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본교 구성원”이라 함은 본교의 교직원, 시간강사, 연구원, 박사연구원(Post-doctoral Researcher) 및 기타 임시직, 학생, 교환학생을 말한다.
2. “성희롱”이라 함은 업무, 교육, 연구 및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,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.
3. “성폭력”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(개정 2003.2.7)

제 4 조 (성희롱 예방교육 실시) 본교는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
제 5 조 (성희롱심의위원회) ①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성희롱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처장, 총무처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09.6.16)

③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(본항신설 2007.5.16)

④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심의
2.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의 조사, 심의 및 시정 권고
3. 성폭력 사안에 대한 징계 권고
4.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
5.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

(개정 2007.5.16)

⑤(삭제 2009.6.16)

⑥제4항 제2호 내지 제4호, 제5조의 2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본교의 구성원이 피해자 또는 가해의 의심을 받고 있는 자인 때에도 적용한다. (개정 2009.6.16)

제 5 조의 2 (양성평등센터) ①본교의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학생처에 양성평등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2.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신고의 접수
3.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
4.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의 의심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상담
5.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6. 기타 위원회의 위임사항

(본조신설 2009.6.16)

제 6 조 (성희롱 및 성폭력 시정신청)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는 위원회에 이 규정에 의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. (개정 2003.2.7)

제 7 조 (성희롱 및 성폭력 조사) ①위원회는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시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당해 성희롱 및 성폭력에 의한 피해의 원인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
2. 성희롱 및 성폭력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
3.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
4. 기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.

③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.

④위원회는 접수된 성희롱 및 성폭력 사항에 관하여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,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제1항의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
(개정 2003.2.7)

제 8 조 (의견제출 기회 부여) 위원회가 성희롱 및 성폭력 시정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, 피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

회를 주어야 한다. (개정 2003.2.7)

제 9 조 (위원회의 시정 등 권고) ①위원회는 성희롱 시정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총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성폭력 시정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총장에게 가해자의 징계를 건의하여야 한다.

(개정 2003.2.7)

제 10 조 (결정의 통지) 위원회가 성희롱 및 성폭력의 시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이의신청) ①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붙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사건 관계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) ①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관계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.

②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사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관계자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.

③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유언비어 또는 미결 사항에 대한 내용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. (개정 2003.2.7)

④ (삭제 2003.2.7)

제 13 조 (공표) 위원회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피해자의 동의 하에 공표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14 조 (시행세칙)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01. 5. 9 제정)

이 규정은 200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2. 7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5. 16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성희롱 등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

부 칙(2009. 6. 16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